

부천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0월 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0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09. 10. 16)
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 설명자 : 하수과장 배덕기)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.(안 제11조)
 - 제131조 → 제140조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”를 “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하천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, 토석·모래·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,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(이하 “점용료”라 한다)와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제1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4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“별표1”의 기준에 의하여”를 “별표 1에 따라”로 하고, “600원미만”을 “600원 미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하고,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하며, “1년미만”을 “1년 미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2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

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2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
““별표 2”의 기준에 의한다”를 “별표 2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하고, “년도분”을 각각 “연도분”으로 하며, “그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”를 “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6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하며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하고, “1월이내”를 “1개월 이내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”을 “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”으로 하고, “점용료중”을 “점용료 중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2조제3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“별표3”의 기준에 의하여”를 “별표 3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제4조의 규정을”을 “제4조를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”을

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0조를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96호
의결 년월일	2009. 11. 23. (제157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0. 5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.(안 제11조)
 - 제131조 → 제140조

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”를 “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하천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

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, 토석·모래·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,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(이하 “점용료”라 한다)와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제1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4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“별표1”의 기준에 의하여”를 “별표 1에 따라”로 하고, “600원미만”을 “600원 미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하고,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하며, “1년미만”을 “1년 미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2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

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2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
““별표 2”의 기준에 의한다”를 “별표 2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하고, “년도분”을 각각 “연도분”으로 하며, “그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”를 “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6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에도”로 하며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회계년도”를 “회계연도”로 하고, “1월이내”를 “1개월 이내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”을 “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”으로 하고, “점용료중”을 “점용료 중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2조제3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“별표3”의 기준에 의하여”를 “별표 3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제4조의 규정을”을 “제4조를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”을

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0조를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</p>	<p>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</p>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, 토석·모래·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, 기타 소하천사용료(이하 "점용료"라 한다)와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하천정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, 토석·모래·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,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(이하 “점용료”라 한다)와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 (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) ①점용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 및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.</p> <p>②부당이득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. 다만,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조(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) ① -----제14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) 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"별표1"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. 다만, 1건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산정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의 산정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) ① ----- 별표 1에 따라 ----- 600원 미만 -----.</p> <p>②-----회계연도----- -----해당 연도----- ----- 1년 미만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제22조제2항에 따른 -----해당 연도----- -----.</p>
<p>제4조 (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감면)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감면은 "별표 2"의 기준에 의한다.</p>	<p>제4조(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감면) ---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----- ----- 별표 2에 따른다.</p>
<p>제5조 (점용료의 징수) ①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, 점용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에 징수하고 그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.</p>	<p>제5조(점용료의 징수) ① -----회계연도 ----- 연도분-----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내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토석, 모래, 자갈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,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,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</p> <p>제6조 (부당이득금의 징수)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·징수하되 무단점유를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제7조 (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)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또는 소하천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 및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및 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.</p>	<p>②</p> <p>-----6개월----- 그 밖</p> <p>-----제 1 항 에 도 ----- 따라</p> <p>-----.</p> <p>③</p> <p>----- 그 밖에 -----.</p> <p>④</p> <p>----- 따른다.</p> <p>제6조(부당이득금의 징수)----- - - 회 계 연 도 -----1개월</p> <p>----- 이내</p> <p>-----.</p> <p>제7조(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) --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 ----- 점용료 중----- .</p>

현행	개정안
제8조 (강제징수)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.	제 8 조 (강 제 징 수) ----- -----따라 -----.
제9조 (수수료의 징수)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"별표 3"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	제9조(수수료의 징수) --- 제22조제3항에 따른 -----별표 3에 따라 -----.
제10조 (수수료의 감면) 수수료의 감면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	제10조(수수료의 감면) ----- 제 4 조 를 -----.
제11조 (이의신청) 점용료·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 1 1 조 (이 의 신 청)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0조를 -----
제13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----- -----. 제13조(시행규칙) -----시행 에 ----- -----.

<관계 법령발췌서>

○ 지방자치법

제140조 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.

②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③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.

⑤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.

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